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1. 10.

지 식 경 제 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단)

1.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우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통상우편요금의 정의, 서신송달업 도입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의 정의를 신설(안 제1조의2)

- 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을 기본중량인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의 통상우편요금으로 정함

나. 신서송달의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우편법 개정안에서 독점의 대상인 ‘서신’에서 ‘신문 등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제3조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동조를 삭제함

다. 서신송달업 신고 관련업무 위임(안 제9조의2)

○ 서신송달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기본통상우편요금)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이란 기본중량인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의 통상우편요금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제9조의2, 제11조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우편이용자를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업무
2. 교통이 불편한 지역 기타 우편물의 집배업무·운송업무 또는 발착업무(우편물을 구분 및 정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우편물을 집배·운송 또는 발착하는 업무
3. 우표류(우표,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와 우표책, 우편물의 특수

취급에 필요한 봉투 및 국제반신우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제하는 업무

4. 법 제15조제2항의 선택적 우편업무 중 우편이용의 편의,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 및 우편사업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위탁업무를 행하는 지역을 구분하여 위탁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수수료 및 당해 업무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경비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권한의 위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제2항제4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2. 법 제2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요구(제2항제2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이용의 제한 및 우편업무의 일부 정지

5.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 등

6. 법 제1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업무의 제공

7. 법 제1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의 제공

8.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업무의 제공

9.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금제품의 결정·고시, 우편물의 취급용적·중량·포장의 결정·고시 및 우편업무의 제공거절·제한

10.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행

11.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요금등의 감액

12. 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편관서의 지정

13.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결정 및 고시

14. 법 제4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편관서의 지정

15.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번호의 결정 및 고시(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16.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제도의 변경을 포함한다)의 시험적 실시

17.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탁

18. 제9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작업

의 효율화를 위한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항 인정

19. 제1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우편 요금수납

20. 제10조의5의 규정에 의한 해외특수지역 군사우편에 관한 업무

21.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발행·판매에 관한
공고

22.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으로부터의 우편요금등을 징
수하고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의 인정

23.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취급하는 무료우편물의 결정

24.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배달 특례지역의 인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
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요구중 국내우편물의 관내운송
의 요구

1의2. 법 제54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2. 제4조제2항에 따른 업무위탁지역의 지정·고시

3. 제5조에 따른 우편구의 결정 및 고시(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선택적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2.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우편물중 등기우편물의 환부
취급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4.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변경 또는 우편물
환부의 청구

5.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우체통의 설치·이용

6. 삭 제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환부하는 우편물의 범위) 법 제28조제2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합한 우편물”이란 서신, 통화
가 들어 있는 봉합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제55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과
태료 부과, 징수업무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우편법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사항 |
| ○ 독점범위 설정기준이 변경될 경우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는 조항(안
제1조의2) |
| ○ 서신 제외 대상을 현행법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변경될 경우
존치될 수 있는 조항(제3조)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조의2(기본통상우편요금)</u> 「 <u>우편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u> ”이란 기본중량인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의 통상우편요금을 말한다.
<u>제3조(신서송달의 예외)</u> 「 <u>우편법</u> 」(이하 “ <u>법</u> ”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서송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u>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아니한 첩장 또는 송장</u> 2. <u>외국과 수발하는 수출입에 관한 서류</u> 3. <u>외국과 수발하는 외자 또는 기술도입에 관한 서류</u> 4. <u>외국과 수발하는 외국환 또는 외국환에 관한 서류</u> 5. <u>국내에서 회사(정부투자기관을 포함한다)의 본점과 지점간 또는 지점상호간에 수발</u>	<u><삭 제></u>

<u>하는 우편물로서 발송후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u>	
<u>6. 외국과 국제특급서비스를 이용하여 수발하는 서류</u>	
제4조 (우편업무의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u>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한다.</u> 1. ~ 3. (생략) 4. <u>법 제15조제1항의 부가우편역무중 우편이용의 편의,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 및 우편사업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u> ② ~ ④ (생략)	제4조(우편업무의 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은 <u>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u>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15조제2항의 선택적 우편역무 중 우편이용의 편의,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 및 우편사업 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무</u> ②~④(현행과 같음)
제9조의2(권한의 위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u>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u> 1. <u>법 제2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편업무의 위탁(제2항제2호의 업무를 제외한다)</u>	제9조의2(권한의 위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u>법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u> 1. <u>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우편업무의 위탁(제2항제4호의 업무를 제외한다)</u>

<u><신 설></u> 2.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운송요구(제2항제1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3·4. (생략) 5.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제공 6.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제공 7. ~ 24. (생략) ② (생략) 제11조 (부가우편역무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이용 2. ~ 6. (생략)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환부하는 우편물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u> <u>불합한 우편물</u>” 이라 함은 <u>신서</u>, 통화가 들어 있는	2. 법 제2조의2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3조의2에 따른 우편물의 운송요구(제2항제2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4·5. (현행 3·4호와 같음) 6. 법 제1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 7. 법 제15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 8. ~ 13. (현행 7~12호와 같음) 14. ~ 2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선택적 우편역무 등의 이용에 따른 수수료) 우편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이용 2. ~ 6.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열어보지 아니하고 환부하는 우편물의 범위)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u> <u>불합한 우편물</u>” 이란 <u>서신</u>, 통화가 들어 있는
---	---

불합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u><신 설></u>	불합한 통상우편물을 말한다. 제56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 등은 「<u>질서위반행위규제법</u>」을 준용한다.
--	--